

대전지방법원 2021. 8. 19 선고 2021가단1189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1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3. 7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9. 6. 11. 접수 제472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)

판사 차호성

별지